

서울특별시 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 안 경 위

- 가. 발 의 자 : 봉양순 의원
- 나. 의안번호 : 제2566호
- 다. 발의일자 : 2025년 3월 31일
- 라. 회부일자 : 2025년 4월 2일

2. 제 안 이 유

-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승인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휴양시설 설치 및 숲가꾸기 등의 사업추진 세부근거를 마련하고자 함
- 숲길 운영관리 측면에서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며, 숲길을 훼손하는 등 금지행위를 규정하여 시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
- 자연휴양림의 조성 및 관리 등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무를 구청장 및 공원여가센터 등에 관리 위임할 수 있도록 함

3. 주 요 내 용

- 가. 자연휴양림조성계획 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7조)
- 나. 산림치유지도사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의 지원을 규정함(안 제11조제2항)
- 다. 숲길 운영관리 측면에서 접근성과 안전성을 높이도록 함(안 제12조의2)

라. 숲길 주변에서의 금지행위를 규정함(안 제14조의2)

마. 자연휴양림의 조성 및 관리 등의 사무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7조)

4. 참 고 사 항

가. 관계법령 : 「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(비대상사유서) 참조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 참조

5. 검토 의견

가. 개요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여 휴양시설 설치 및 숲가꾸기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, 사회적 약자의 접근성을 고려한 이용 및 숲길 훼손 금지 행위를 규정하여 시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자연휴양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나. 검토의견

- 동 조례는 산림문화 및 산림휴양 활성화를 위해 「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)에서 위임한 사항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('24.3.26)되었으며, 이를 근거로 서울시 최초 자연휴양림 사업, 정원도시 및 산림치유 사업 등을 원활히 추진하고 있음.
- 서울시는 현재 ‘자연휴양림 조성 사업’을 2개소에서 추진 중으로 제1호 수락산 자연휴양림은 올해 7월 운영(개장) 예정이고, 제2호 관악산 자연휴양림¹⁾은 기본계획 용역이 추진 중인바, 자연휴양림 조성계획과 숲가꾸기 및 숲길 운영 관리 측면을 구체적으로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시의적절할 것임.
- 안 제7조는 법 제14조제2항과 제5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의 지정 및 조성,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(변경)작성 과정에서 시장의 승인과 고시 등의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이견 없음.
- 안 제11조제2항은 산림치유지도사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, 이는 법 제11조의3에 따라 현재 정원도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므로²⁾ 예산지원 근거를 동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로 판단됨.

1) 수락산 자연휴양림 조성(예산 103억원), 사업기간('19.4~'25.6.), 시범운영('25.6.~7.), 공식 개장('25.7. 예정)
관악산 자연휴양림 조성(예산 141억원), 사업기간('24.~'27.), 공식 개장('27.6.예정)

2) 「서울형 치유의 숲길 확대 운영」 2025년 예산(5억 3천7백만원), 산림치유지도사를 통한 자연 체험, 명상, 요가 등 산림활용 서비스 제공

- 안 제12조의2는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접근성을 고려한 숲길 이용 시설을 포함하도록 하고, 안 제14조의2는 숲길 훼손, 쓰레기 투기 및 표지판 훼손 등의 금지행위를 규정하는 것으로 보행 약자의 안전하고 편안한 숲길 이용 및 쾌적한 숲길 운영·관리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.
- 안 제17조는 구청장 및 공원여가센터소장에게 ‘자연휴양림의 조성 및 관리 등’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는 것으로 자연휴양림 사업추진 시 시설의 설치와 관리 운영의 주체를 명확히 하여 예산 집행과 관리·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견 없음³⁾.

3) 「서울특별시 노원구 수락산 동막골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」
[시행 2024. 7. 4.] [노원구조례 제1919호, 2024. 7. 4., 제정]